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3년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

1. 과정명 :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2. 시행일정 : 2023. 4. 3. ~ 2023. 7. 13.

- 기본과정 : '23. 4. 3. ~ 4. 22.
- 필기평가 : '23. 5. 13.
- 실무과정 : '23. 6. 19. ~ 7. 12.
- 실기평가 : '23. 7. 13.

3. 교육장소

가. 기관명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

다. 연락처 : 055-254-4034

4. 모집인원 : 30명

5. 참가 자격요건(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1 참조)

1. 등급별 자격기준

각 등급별 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등급에 따른 자격을 부여한다.

등급	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환경교육사 2급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환경교육사 3급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2.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신청방법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23. 3. 13. ~ 2023. 3. 24.(12일간)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서

2) 제 출 처 : 환경교육포털 내 환경교육사 홈페이지 (문의처 : 055-254-4034)

3)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다. 선정방법

1) 참가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교육인원 및 교육후보인원 선발

* 교육인원 중 미등록이나 자격제한 대상자 발생 시 교육후보인원 중 차순위자에게 연락 예정

라. 선정결과 공지 계획

1) 일시 : 2023. 3. 29.(수)

2) 방법 : 환경교육사 및 경상남도환경교육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보

7.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가. 교육과정

구분	교 육 내 용		시 간		
	과정	과목명	계	이론	실습
1. 1급 과정 (120시간 이상)	계		120	60	60
	기본 (39시간 이상)	생태문명의 이해	9	9	-
		조직 운영 및 인재관리	9	9	-
		사회적 경제 이해	6	6	-
		회계 및 재무관리	9	9	-
		환경교육과 리더십	6	6	-
	실무 (81시간 이상)	환경교육 현황과 진단	9	-	9
		환경교육 세미나	12	-	12
		환경교육 시설 계획 및 실습	12	6	6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12	-	12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24	3	21
		선택교과	12	12	-
2. 2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84	60
	기본 (48시간 이상)	환경과 사회	6	6	-
		통합적 환경탐구	15	15	-
		환경교육정책 및 법규	6	6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12	12	-
		인적자원 관리	9	9	-
	실무 (96시간 이상)	지역 환경교육 현장 연구	12	-	12
		환경교육 사업 기획, 평가	24	-	24
		환경교육 홍보·마케팅	9	3	6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12	3	9
		환경교육 전시 관리	9	-	9
		선택교과	30	30	-
3. 3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93	51
	기본 (54시간 이상)	환경과 철학	6	6	-
		환경교육론	12	12	-
		환경생태학	12	12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	15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	9	-
	실무 (90시간 이상)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	6	1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	6	18
		지역환경문제 탐구	12	3	9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	3	9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	3	3
		선택교과	18	18	-

비고: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정별 교육내용 및 시수를 환경부장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교육방법 : 강의 및 실습

다.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구분	평가방법	이수기준
1. 필기평가	**정량 평가**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기평가 (수행평가)	**정성평가** (과목별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1급은 면접평가 추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1) 환경교육사 자격을 위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함

2) 필기 또는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교육생들은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지는 않아도 되며, 양성과정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응시 기회를 갖을 수 있음

3)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8. 교육수수료 : 시설사용료 및 식비 / 253,000원 *실기평가 응시료 별도 부과

가. 1박 4,000원, 1식 : 7,000원 / 9박, 31식

나. 결제 방법 : 계좌이체

다. 실기평가 응시료 별도 부과(응시인원에 따라 변동)

라. 교육과정 참여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교육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준용함

※ 교육비 반환기준은 실무과정 운영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9. 자격제한(법 제16조제2항 관련)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도사 본인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나. 기본과정을 이수한 기관에서 실무과정 수료 및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추후 실무과정 모집 시 동일 기관에 접수해야 함

다. 기타 양성과정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경상남도환경교육원(055-254-4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